기본과제 2021-19

지방세 세원발굴

– 지방환경세제 도입 검토 –

김 덕 준 선임연구위원

CRI 2021

CRI 충북연구원
CHUNGBUK RESEARCH INSTITUTE

Contents

제Ⅰ장 서론 ·····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내용 및 방법 ····· 4

제Ⅱ장 지방세 세원 발굴 관련 논의 ····· 5

1. 지방세제 연혁 ····· 5

2. 지방환경세제 논의 ····· 9

제Ⅲ장 주요 환경 이슈 ····· 11

1. 폐기물 관련 이슈 ····· 11

2. 축산물 관련 이슈 ····· 23

제Ⅳ장 세목신설안의 대안 탐색 ····· 30

1. 정부정책 방향 : 지방세입 확충 기반 강화 ····· 30

2. 대안 탐색 : 폐기물 유통 및 처리 관련 세목 신설 ····· 31

3. 대안 탐색 : 축산물 관련 세목 신설 ····· 44

제Ⅴ장 결론 ····· 48

참고문헌 ····· 50

표 차례

〈표 Ⅰ-1〉 국세 대 지방세 비율 ····· 1
〈표 Ⅲ-1〉 폐기물 유형별 발생 현황 ····· 12
〈표 Ⅲ-2〉 폐기물 종류별 지역별 발생 현황 ····· 13
〈표 Ⅲ-3〉 폐기물 처리주체별 처리 현황 ····· 14
〈표 Ⅲ-4〉 폐기물의 연도별 처리방법의 변화 ····· 15
〈표 Ⅲ-5〉 매립시설 현황 ····· 15
〈표 Ⅲ-6〉 소각시설 현황 ····· 16
〈표 Ⅲ-7〉 폐기물처리업체 현황 ····· 16
〈표 Ⅲ-8〉 폐기물 관련 각종 부담금 현황 ····· 19
〈표 Ⅲ-9〉 축산업 규모 ····· 23
〈표 Ⅲ-10〉 지역별 사육현황(2020년 1/4분기 기준 ····· 24
〈표 Ⅲ-11〉 주요 축산물 공급 현황 ····· 25
〈표 Ⅲ-12〉 도축장 현황(2020년 3월 기준) ····· 25
〈표 Ⅲ-13〉 지역별 도축현황(2019년 기준) ····· 26
〈표 Ⅲ-14〉 축산업의 외부불경제 분류 ····· 27
〈표 Ⅲ-15〉 사회재난 가축전염병 피해규모 ····· 28
〈표 Ⅳ-1〉 폐기물 종류별 소각 · 매립처분 단가 ····· 35
〈표 Ⅳ-2〉 담배 관련 조세 및 부담금 ····· 37
〈표 Ⅳ-3〉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요율(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별표6) ····· 38
〈표 Ⅳ-4〉 지역자원시설세와 폐기물처분부담금 비교 ····· 38
〈표 Ⅳ-5〉 충북 폐기물 유통 현황 ····· 42
〈표 Ⅳ-6〉 충북외 타 시도 반입 현황 ····· 42
〈표 Ⅳ-7〉 처리지(충북) 기준 처리방법별 처리현황 ····· 43
〈표 Ⅳ-8〉 과세대상 및 세수추계액 ····· 43
〈표 Ⅳ-9〉 지역별 가축사육 두수 및 비중 ····· 44
〈표 Ⅳ-10〉 지역별 도축 두수 및 비중 ····· 45
〈표 Ⅳ-11〉 도축검사 수수료 ····· 47

그림 차례

〈그림 Ⅱ-1〉 지방세 구조 ····· 8
〈그림 Ⅲ-1〉 폐기물 분류체계 ····· 11
〈그림 Ⅲ-2〉 폐기물 종류별 발생 추이 ····· 12
〈그림 Ⅳ-1〉 폐기물 발생 및 유통 과정 ····· 32

제Ⅰ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2020년 기준 76.2 : 23.8로 지방세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낮은 지방세 비중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는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을 단행하였으며, 사무이양을 통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음

〈표 Ⅰ-1〉 국세 대 지방세 비율

(단위 : 억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국 세 (%)	2,055,198 (76.9)	2,178 851 (75.4)	2,425,617 (76.3)	2,653 849 (76.7)	2,935,704 (77.7)	2,947,919 (77.5)	2,919,969 (76.2)
지방세 (%)	617,225 (23.1)	709,778 (24.6)	755,306 (23.7)	804,063 (23.3)	843,153 (22.3)	855,359 (22.5)	909,501 (23.8)

주 : 2018년 까지는 결산, 2019년은 최종예산, 2020년은 당초예산.
자료 : 행정안전부(2020).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 하지만, 지역간 불균형 발전으로 인해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

재정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논의되고 있음

- 헌법 개정(안)은 지방재정분권 강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와 관련한 지방세 개편 논의가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생산 및 소비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로 인해 야기되는 외부불경제 교정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환경세적 관점에서 지방세 개편을 논의하고 있음

- 폐기물 처리 등에 소요되는 재원 조달
- 타지역 발생 폐기물 반입 제한 및 감소

○ 시멘트생산시설은 주변지역에 환경피해를 야기시키고 있으나, 이에 피해를 보는 지역주민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요구됨

- 시멘트는 생산과정에서 다량의 이산화탄소 뿐만 아니라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시멘트생산시설은 주변지역 주민의 보건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 2008~2009년 기간 이루어진 강원도 영월군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에 따르면, 시멘트분진과 석회석 분진 등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 유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김필헌 등, 2020)되었으며, 국립환경과학원(2015)은 영월·삼척·강릉·동해, 제천·단양, 장성 등 소성로를 운영하는 시멘트공장의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변지역에서 미세먼지, 호흡기 관련 질병, 진폐증, 간질성 폐렴 등 다양한 보건환경을 저해하는 질병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음

○ 또한, 도축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불경제 교정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축세 재도입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음

- 가축의 도축을 위해서는 축산생산시설에서 도축장으로 이동하여 도축을 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동경로상에 방역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도축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변환경에 대한 악영향으로 인해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가 상당한 상황임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내 발생하고 있는 환경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비를 지출하고 있으나, 이를 보전하기 위한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지방재정의 위축이 예상되는 상황임

- 따라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지방세 세원 발굴이 필요하며, 외부불경제

문제를 해소하여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논의 중에 있는 지방세 세원 발굴(안)에 대한 검토

2)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충청북도가 최근 논의중에 있는 시멘트 제조를 위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의 해소를 위해 제안한 시멘트세와 도축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방역 등 환경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안한 도축세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현재 제시되고 있는 안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 시멘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둘러싼 쟁점은 시멘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와 관련하여 이중과세 가능성, 조세의 형평성 및 효율성, 세율과 조세부담의 적정성 등 다양한 쟁점이 존재하며, 이러한 쟁점에 대해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2018)에서 세부적으로 논의된 바 있으며, 연구에 따르면 과세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하고 있음(김필헌 등, 2020)

- 하지만, 지역자원시설세로 과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음
- 현재 시멘트 생산과 관련하여 시멘트를 지역자원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로 이 경우 실제로 폐기물 소각이라는 행위에 대한 제한을 통해 지역환경의 개선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는 의문임
- 따라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시멘트에 대한 과세를 하는 방안보다는 시멘트를 생산하기 위해 원료 및 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폐기물의 사용을 제한하는 방향을 과세 방향이 설정될 필요가 있음

○ 도축세와 관련해서는 도축세는 현재 지방세에서 폐지된 상태이지만, 도축장을 중심으로 주변의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는 도축 행위와 관련해 발생하는 환경피해를 최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축과 관련한 세목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폐기물 소각 및 도축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의 조달은 지방세를 신설하여 조달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역내 발생하는 불경제효과 시정해 나가야 함

2.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범위

○ 시간적 범위 : 2018년 ~ 2020년

○ 공간적 범위 : 전국 광역자치단체

2) 주요 연구내용

○ 지방세 연혁 및 구조

- 지방세 연혁 및 지방세 구조

○ 지방세 세원발굴 관련 기존 연구 검토

- 신세원 발굴 및 기존 지방세 개편 연구

○ 지방세 신세원 발굴 및 대안에 관한 논의

- 광역차원 : 폐기물 관련 세목
- 기초차원 : 축산물 관련 세목

○ 정책 제언

- 향후 지방세법 개정을 위한 논의

3) 연구 방법

○ 문헌연구

- 법·제도 검토(지방세 관련 법률 등) 및 선행연구 검토

○ 현황분석

- 17개 시·도 대상 폐기물 및 가축 관련 현황

○ 전문가 자문

-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을 통해 정책대안 도출

제Ⅱ장
지방세 세원 발굴 관련 논의

1. 지방세제 연혁

1) 2000년대 이후 지방세제

■ 2000-2004년 지방세제

○ 2000년 말에는 지방교육세를 신설하고,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명칭을 변경하는 (2000.12.29, 법률 제6312호) 등 지방세제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개편이 추진되었음

- 이 시기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자치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세에 부가되는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하였으며, 2001년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경주·마권세를 레저세로 개칭하였음

■ 2005-2009년 지방세제

○ 참여정부는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차단하고자 2005년 1월 5일 부동산보유세제의 기본 틀을 개편하였음

- 2005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보유세제는 재산세(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를 근간으로 하는 세제로 개편되었음

- 부동산보유세의 과세대상은 종전 건물과 토지에서 건물/토지/주택(신설, 주택 건축물분과 부속토지 포함)으로 변경되었음
- 과세체계는 건물, 토지, 주택에 대한 재산세(지방세)와 토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국세)로 이원화되었음

○ 부동산보유세 관련 제도 변화를 살펴보면, 주택가격공시제도 시행(2005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 상한제 도입(2005년), 부동산실거래가격신고제도 시행(2006년), 시가표준액의 과세표준 적용비율제가 폐지되는 대신 공정시장가액비율제(2009년) 대체 등이 있음

■ 2010년 지방세제 개편

○ 2010년에는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 전환하는 지방세 개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세수를 확충하고자 하였으며, 과세대상에 유사성을 갖는 주민세와 사업소세의 통폐합을 통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하였음(2010.1.1., 법률 제9924호)

- 지방소비세 : 부가가치세 5%를 지방세로 이양하여 광역자치단체의 세목으로 운영
- 주민세(소득할)와 사업소세(종업원할)[1]의 통합 : 특별시세, 광역시세, 시·군세로 하는 지방소득세 신설
- 농업소득세 폐지 : 영세농가 지원과 농업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소득세 폐지
- 지방세출예산제도 도입 :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를 도입
- 주민세 : 균등분(관할구역내 주소한 개인과 법인)과 재산분(사업소의 연면적)으로 구분하여 과세
- 지방소득세 : 소득분(과거 소득할에 해당하는 주민세)과 종업원분(과거 종업원할에 해당하는 사업소세)으로 구분

○ 2010년 기준 지방세 세목(16개)

- 보통세 :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1) 광역시 자치구(특별시 자치구 제외)는 세수결손을 막기 위해 종전의 사업소세 세수를 광역시 자치구 세수로 귀속하면서 사업소세 폐지

도축세, 면허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 목적세 :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 지방세법 체계 개편(2010년 2월 26일 지방세법 분법)

- 단일법으로 운영되었던 기존의 지방세법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법체계로 개편

○ 지방세법 전부 개정(2010년 3월 31일)

- 지방세 세목 : 기존 16개에서 11개로 축소(2010.3.31, 법률 제10221호)
- 취득세 : 취득세와 취득 관련 등록세 → 취득세로 통합
- 재산세 :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통·폐합
- 등록면허세 : 저당권, 전세권, 상호등기, 법인설립등기 등과 같이 취득과 무관한 사항에 대한 등록세와 면허세 → 등록면허세(등록분, 면허분)로 개편
- 지역자원시설세 :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 →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 특정자원분)로 통합
- 자동차세 : 자동차세와 주행세 → 자동차세(주행분, 소유분)로 통합
- 도축세 :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세수 영세성 등의 사유로 폐지
- 유지세목 : 주민세(균등분, 재산분),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소득분, 종업원분), 지방교육세

○ 2011년부터 지방세 세목(11개)

- 보통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 목적세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2013년 이후 지방세제 개편

○ 2013년 이후 지방세제 개편의 방향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 및 지역경제 발전을 모고하고자 지방세수의 신장에 초점을 맞춤

○ 지방소비세율 인상 : 지방소비세 재원인 기존 부가가치세 세수의 5%를 2014년부터 11%로 6%p 인상

○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 기존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징수하던 방식을 독립세로 전환

○ 주민세 :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2013년까지 종업원분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는 2014년부터 주민세로 이관(종업원분 주민세)하여 주민세는 균등분, 종업원분, 재산분의 3원체계로 운영

○ 지방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2원체계로 운영

자료 : 위택스(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그림 Ⅱ-1〉 지방세 구조

2) 시사점

○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관리는 실질적으로 중앙정부가 수행하고 있으나, 폐기물의 발생과 유통에 따른 지역의 환경피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하는 문제로 인해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이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실정

○ 도축세는 세수가 영세할 뿐만 아니라,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폐지하였으나, 지역내 도축시설의 환경 문제 유발시설이라는 점을 간과하여 이들 시설의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 발생

○ 이렇듯 지역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세제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 지방환경세제 논의

1) 환경의 특성

○ 자원은 일반적으로 경제활동 내부에서 활용되며, 이용가능성이 있으며, 노동력 투입에 의해 가공될 수 있으나, 환경은 자원으로서의 인식되어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지만, 직접 활용되는 것은 아님

- 이현우(2012)는 자원과 환경은 연속적인 순환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하였음
- 다시말해, 자원은 경제활동의 과정에서 경제적인 가치를 지닌 재화로 인식되고 활용되지만, 환경은 인간활동의 기초적인 조건으로 인식되며, 경제적인 재화로 인식되지 않음
- 하지만, 자원과 환경은 자연과 인간의 관점에서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연속적 순환관계로 볼 필요가 있음

○ 그는 환경의 순환구조는 그 자체에 내재된 속성을 갖는 이유가 다음과 같은 성격으로 인해서라고 지적하였음임

- 공동성과 비배제성 : 환경은 개인이 독점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함
- 불가역성 : 환경은 파괴되면 원상태로 회복되기 어려우며, 만약 재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며, 원상태로 돌아가지 않음
- 지역성 : 환경의 요소들인 경치, 자연 및 도시 경관 등은 지역적으로 불균등하게 분포하며, 특정 지역 및 특정 공간간에는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의 편차가 큼

2) 지방환경세의 도입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행정을 운영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환경의 보존 또는 훼손된 환경의 복원 등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인 자원을

마련하여 이를 수행해 나가야 하며, 이는 환경에 대한 지역관리자로서의 행정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세는 보편성, 안정성, 정착성, 응익성 등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함

- 환경문제는 지역적으로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모든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로 공동성과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편성원칙을 충족시킴
- 환경문제는 경제의 발전 정도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경향성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세수확보 측면에서 안정성원칙을 충족시킴
- 환경문제는 지역적으로 지속해 발생하기 때문에 정착성원칙에 부합하며, 지역적 편재성으로 인해 환경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지역주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응익과세원칙을 충족시킴

○ 환경에 대한 관리주체는 누구인가의 문제로 환경문제는 정보수집, 정책수립 및 집행, 환경보호 관리 및 감독 등에 있어서 중앙정부보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며, 상대적으로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지역관리의 필요성이 부각됨

○ 따라서 환경세는 환경의 지역적 편재성으로 인해 지방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한 재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지방세 체계 편재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이상의 논의와 더불어 지방환경세를 도입할 경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성격으로 인해 그 타당성을 논의할 수도 있음

- 외부불경제의 내부화 : 환경문제를 유발시키는 원인에 대해서 과세하여 외부불경제를 내부화시켜 환경문제의 유발을 억제하도록 대응하도록 중점을 둘 수 있음
- 조세부담의 공평성 :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공공서비스의 필요재원으로 사용함으로써 환경문제에 대한 책임을 부하의 정도에 따라 부담시킬 수 있음

제Ⅲ장
주요 환경 이슈

1. 폐기물 관련 이슈

1)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폐기물 분류체계

○ 폐기물은 크게 가정과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것으로 구분됨

- 사업장폐기물은 생활계폐기물, 배출시설계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로 분류
- 가정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중에서 생활계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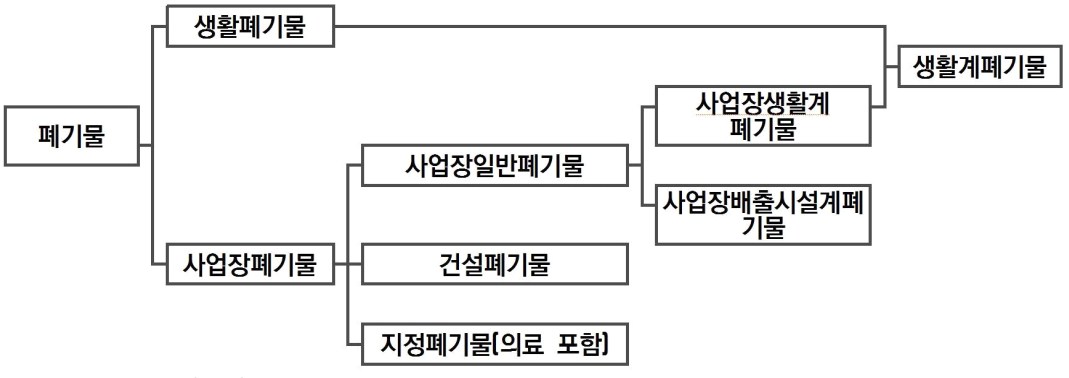

자료 : 환경부·한국환경공단(2019), 2019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그림 Ⅲ-1〉 폐기물 분류체계

■ 폐기물 발생 현황

○ 2018년도에 발생한 폐기물량은 446,102톤/일으로 나타났으며, 전년 429,531톤/일 대비하여 약 3.9% 증가하였음

- 폐기물 종류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건설폐기물이 46%로 가장 많았으며, 사업장배출시설계 38%, 생활계폐기물 13% 순으로 나타남

〈표 Ⅲ-1〉 폐기물 유형별 발생 현황

(단위 : 톤/일,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총 계	발생량	393,116	401,658	418,214	429,128	429,531	446,102
	전년대비	-0.3	2.2	4.1	2.6	0.1	3.9
생활계 폐기물[2]	발생량	48,728	49,915	51,247	53,772	53,490	56,035
	전년대비	-0.5	2.4	2.7	4.9	-0.5	4.8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3]	발생량	148,443	153,189	155,305	162,129	164,874	167,727
	전년대비	1.4	3.2	1.4	4.4	1.7	1.7
건설 폐기물	발생량	183,538	185,382	198,260	199,444	196,262	206,951
	전년대비	-1.7	1.0	6.9	0.6	-1.6	5.4
지정[4] 폐기물	발생량	12,407	13,172	13,402	13,783	14,905	15,389
	전년대비	-0.6	6.2	1.7	2.8	8.1	3.2

자료 : 환경부·한국환경공단(2019), 2019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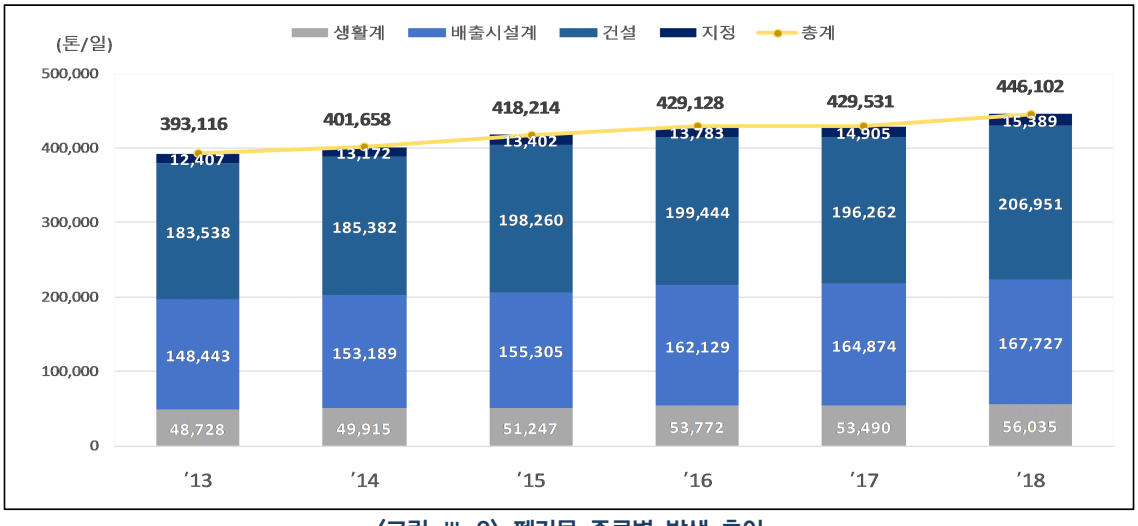

〈그림 Ⅲ-2〉 폐기물 종류별 발생 추이

2) 생활계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공사장생활계폐기물을 모두 포함한 수치임
3)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은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수치임
4) 지정폐기물은 사업장지정폐기물과 의료폐기물을 포함한 수치임

〈표 Ⅲ-2〉 폐기물 종류별 지역별 발생 현황

(단위: 톤/일, %)

구분	2018년도 전체 발생량		생활계폐기물	배출시설계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전체	구성비				
총 계	446,102	100.0	56,035	167,727	206,951	15,389
서 울	46,543	10.4	9,493	1,855	34,841	354
부 산	20,909	4.7	3,337	3,165	13,639	768
대 구	13,515	3.0	3,015	2,568	7,561	371
인 천	27,218	6.1	2,775	10,678	12,818	947
광 주	6,744	1.5	1,272	948	4,388	136
대 전	8,246	1.8	1,611	1,537	4,918	180
울 산	14,186	3.2	1,550	6,173	5,012	1,451
세 종	3,285	0.7	405	1,205	1,581	94
경 기	85,156	19.1	12,406	18,892	50,332	3,526
강 원	15,849	3.6	2,373	5,038	8,276	162
충 북	17,819	4.0	2,163	6,713	7,986	957
충 남	56,089	12.6	2,962	41,738	9,631	1,758
전 북	17,546	3.9	2,109	5,854	8,828	755
전 남	33,921	7.6	2,067	23,005	7,937	912
경 북	39,594	8.9	3,246	22,073	12,367	1,908
경 남	34,634	7.8	3,937	15,847	13,771	1,079
제 주	4,847	1.1	1,314	438	3,065	30

자료 : 환경부·한국환경공단(2019), 2019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폐기물 처리 주체별 현황

○ 폐기물은 ①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하여 처리하거나, ②전문적인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거나, ③사업자 스스로가 처리시설 설치를 통해 처리할 수 있음

- 폐기물 처리는 처리업체 수와 폐기물처리 가격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음
- 처리업체 수가 시장균형 조건에 비하여 적으면 처리 가격이 높아져 자가 처리의 비중이 높아지며, 처리업체 수가 많으면 처리 가격이 낮아져 업체 간 가격경쟁으로 인해 업체의 불법처리 가능성이 높아짐(김행선 등, 2016)

○ 2018년도 폐기물 처리주체별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9.5%로 가장 많았으며, 처리업체 81.5%, 자가처리 9.0% 순으로 나타남

- 생활계폐기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처리 비율이 64.3%로 가장 높으며, 사업장 폐기물[5]은 처리업체에 의한 처리 비율이 88.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Ⅲ-3〉 폐기물 처리주체별 처리 현황

(단위: 톤/일)

구 분		계	비율(%)	매립	소각	재활용	해역배출	기타
총 계	계	446,102	100.0	34,649	26,404	384,237	42	770
	자치단체	42,438	9.5	12,240	12,821	17,377	0	0
	처리업체	363,737	81.5	15,235	8,639	339,128	42	693
	자가처리	39,927	9.0	7,174	4,944	27,732	0	77
생활계 폐기물	계	56,035	100.0	7,525	13,763	34,747	0	0
	자치단체	36,028	64.3	7,065	12,368	16,595	0	0
	처리업체	19,769	35.3	429	1,301	18,039	0	0
	자가처리	238	0.4	31	94	113	0	0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계	167,727	100.0	21,060	9,715	136,910	42	0
	자치단체	3,573	2.1	2,342	449	782	0	0
	처리업체	125,869	75.1	11,853	4,576	109,398	42	0
	자가처리	38,285	22.8	6,865	4,690	26,730	0	0
건설 폐기물	계	206,951	100.0	2,948	654	203,349	0	0
	자치단체	2,833	1.4	2,830	3	0	0	0
	처리업체	203,566	98.3	115	651	202,800	0	0
	자가처리	552	0.3	3	0	549	0	0
지정 폐기물	계	15,389	100.0	3,116	2,272	9,231	0	770
	자치단체[6]	4	0.0	3	1	0	0	0
	처리업체	14,533	94.5	2,838	2,111	8,891	0	693
	자가처리	852	5.5	275	160	340	0	77

자료 : 환경부·한국환경공단(2019), 2019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폐기물 처리방법별 변화 추이

○ 폐기물은 매립, 소각, 재활용 등으로 처리되며, 2018년 기준 재활용으로 처리되는 비율은 86.1%로 가장 높았으며, 전년 85.4% 대비 0.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18년도 매립률은 7.8%로 나타났으며, 전년 8.3% 대비 0.5%p 감소하였으며, 소각률은 5.9%로 나타났으며, 전년 6.1% 대비 0.2%p 감소하였음

5) 사업장폐물은 사업장배출시설계,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을 포함 함
6) 지정폐기물의 자치단체 처리량은 공공소각시설 및 공공매립시설로 처리한 경우임

〈표 Ⅲ-4〉 폐기물의 연도별 처리방법의 변화

(단위: 톤/일)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발생	비율	발생	비율	발생	비율	발생	비율	발생	비율	발생	비율
총 계	393,116	100.0	401,658	100.0	418,214	100.0	429,128	100.0	429,531	100.0	446,102	100.0
매 립	37,974	9.7	37,906	9.4	37,801	9.0	37,942	8.8	35,524	8.3	34,648	7.8
소 각	25,041	6.4	24,523	6.1	26,084	6.2	26,450	6.2	26,290	6.1	26,404	5.9
재활용	326,910	83.2	336,815	83.9	352,824	84.4	363,800	84.8	366,650	85.4	384,237	86.1
해역배출	2,608	0.7	1,423	0.4	661	0.2	92	0.0	48	0.0	42	0.0
기 타[7]	583	0.1	991	0.2	844	0.2	844	0.2	1,019	0.2	771	0.2

자료 : 환경부·한국환경공단(2019), 2019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폐기물 처리 업체 현황

○ 매립시설 현황

- 매립시설[8]은 총 282개로 나타났으며, 총 매립용량은 664,283,553㎥임
- 잔여 매립용량은 265,938,257㎥로 나타났으며, 2018년도 매립량은 13,506,618톤/년으로 나타남
- 운영주체별로 매립시설 수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218개, 자가처리업체 33개, 최종처분업체 31개로 나타남

〈표 Ⅲ-5〉 매립시설 현황

(단위 : 개소, ㎥, %)

구 분	시설수	총매립용량	잔여매립		'18년 매립량(톤/년)
			용량	비율	
총 계	282	664,283,553	265,938,257	100.0	13,506,618
지방자치단체	218	480,221,830	215,629,115	81.1	6,435,971
자가처리업체	33	132,560,868	36,257,743	13.6	2,367,859
최종처분업체	31	51,500,855	14,051,399	5.3	4,702,788

자료 : 환경부·한국환경공단(2019), 2019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7) 지정폐기물 '기타'로, 기타=(기타 처리량+최종보관량)-전년도 이월량을 나타내며, '기타 처리량'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Ⅲ의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 내 중간처분시설 중 기계적(압축, 파쇄 등), 화학적(고형화, 중화, 응집 등), 생물학적(호기성, 염기성 등) 처분시설 등을 나타냄

8) 매립시설 현황의 시설수, 총매립용량, 잔여매립의 경우,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각 통계 내 중복업체를 제외하여 산정하였음

○ 소각시설 현황

- 소각시설은 총 412개로 나타났으며, 시설용량은 34,401톤/일로 2018년도 소각량은 9,674,832톤/년으로 나타남
- 운영주체별로 소각시설 수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178개, 자가처리업체 150개, 중간처분업체 84개로 나타남

〈표 Ⅲ-6〉 소각시설 현황

(단위 : 개소, 톤/일, 톤/년)

구 분[9]	시설수	시설용량	'18년 소각량
총 계	412	34,401	9,674,832
지방자치단체	178	17,124	4,563,156
자가처리업체	150	8,058	1,843,500
중간처분업체	84	9,219	3,268,176

자료 : 환경부·한국환경공단(2019), 2019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폐기물처리업소 현황

- 처리업체[10]는 총 14,574개소로 나타났으며, 그중 수집·운반업체가 7,503개소(51.5%)로 가장 많았으며, 종합재활용업은 4,473개소(30.7%)로 나타남

〈표 Ⅲ-7〉 폐기물처리업체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총계[11]	수집·운반업	중간처분업	최종 처분업[12]	중간 재활용업	최종 재활용업	종합 재활용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총 계	14,574	7,503	210	51	1,499	280	4,473	558
생활 폐기물	1,394	1,394	-	-	-	-	-	-
생활+사업장	492	492	-	-	-	-	-	-
사업장폐기물	8,997	3,213	125	30	1,334	277	4,018	-
건설폐기물	2,209	1,651	-	-	-	-	-	558
지정폐기물	1,482	753	85	21	165	3	455	-

자료 : 환경부·한국환경공단(2019), 2019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9) 소각시설 현황의 시설수, 시설용량의 경우,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각 통계 내 중복업체를 제외하여 산정하였음
10) 폐기물 종류별 처리업체 산정 시,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통계 내 업체를 중복 허용하였음
11) 폐기물 종류별 처리업체 종류별 수량 산정 시,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통계 내 업체 중복 허용하였음
12)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설폐기물 최종처분업소는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고, 건설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의 범주로 포함하고 있음

2)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

○ 시멘트를 생산하는 과정은 연료연소와 소성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어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됨(김필헌 등, 2020)

- 시멘트를 생산하는 과정은 석회석을 채광하여 원료를 생산하고, 소성과정을 거쳐 시멘트를 생산하는 과정으로 진행되며, 석회석 채광, 부원료인 점토, 납석, 규석, 철광석, 경석 등의 혼합 등의 과정에 다양한 재료가 첨가되어 원료를 생산하게 됨

○ 문제는 1997년 폐타이어의 시멘트 소성로 연료 사용 허용, 1999년 「폐기물 관리법」 개정을 통한 폐기물의 시멘트 부원료와 보조연료 사용 허가 등을 통해 각종 폐기물을 연료 및 대체원료로 사용하면서 다량의 환경유해물질을 배출하게 되었다는 것임

- 김필헌 등(2020)에 따르면 국내의 시멘트업체들은 폐타이어를 1997년부터 연료로 사용기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폐합성고무류, 타이어칩, 폐목재 등 각종 폐기물을 대체원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 시멘트 업계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 환경부와 자치단체 등과 자발적 환경관리 협약을 체결하여 국내 유통되는 시멘트 제품의 중금속 포함 여부를 모니터링 하고 있음(김용준 등, 2018)

- 하지만,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사용하는 폐목재는 건설, 건물해체, 생활 폐가구, 가구공장 부산물 등이 대부분으로 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트리트 등으로 오염(김필헌 등, 2020)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유해물질을 배출할 가능성이 높게 됨

○ 또한,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2019년 기준 약 1천만 톤 정도의 재활용 폐기물이 소각되고 있으나, 김필헌 등(2020)은 시멘트공장이 석탄화력발전소보다도 낮은 대기배출 허용기준이 적용되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시멘트공장의 경우 평균 210ppm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서 지적받은 바 있음(칸 저널, 2019)

- 석탄화력발전소 질소산화물배출허용기준 : 15~140ppm
- 제철소 질소산화물배출허용기준 : 60~160ppm
- 시멘트공장 질소산화물배출허용기준 : 270ppm

- 시멘트소성로에 대한「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은 소각시설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김필헌 등, 2020)

3) 폐기물 처리 관련 세목 신설 논거

(1) 외부효과의 교정을 위한 피구세 성격

○ 폐기물 처리세는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염으로 인한 문제와 같은 외부효과(外部效果)를 교정하기 위한 피구세(Pigouvian Taxation)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음(김금수, 2014)

- 생산 및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각종 오염으로 인한 지역적 환경문제 유발에 대해서 공정한 정부의 개입이 없다면, 시장에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 할 것(김금수, 2014)이기 때문에 결국 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경제활동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며, 사회적인 낭비 또는 비효율을 발생시키게 됨

- 이러한 사회적 낭비를 해소하기 위해서 생산과정에서 폐기물을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자신이 행한 오염행위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인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폐기물처리세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폐기물처리세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생산활동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줄이도록 하여 환경오염의 문제를 내부화하는 것이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폐기물처리세와 관련한 중요한 이슈는 누구에게 부과해야 하는가 이며, 세금의 전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임

- 폐기물처리세는 폐기물의 최종처리량을 줄이고 재활용량을 늘려 원천적으로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 목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오염자 부담원칙에 입각하여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함

- 배출자를 납부자로 할 경우 부과대상이 광범위하여 과세과정에서 행정비용이 크게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종처리업자를 납부자로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단, 최종처리업자를 납부자로 할 경우 부과대상이 한정되어 행정비용이 감소할 수 있으나, 배출자에게 세금이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최적세율산정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김금수(2014)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최종처리업자에게서 배출사업자로 전가되는 상황에 대한 마찰이 없을 경우, 부과방식이 어떠냐와는 상관없이 배출사업자와 최종처리업자간에 동일하게 세금이 분담될 것으로 보았음

(2) 지방자치단체 환경정책의 실효성 제고

○ 폐기물과 관련하여 지역내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환경관련 부담금을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음

- 이원희(2012)는 현재 징수되고 있는 각종 환경관련 부담금이 지방세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이유로 지역실정에 맞는 환경정책 실시, 부담금징수 인센티브, 환경개선특별회계운영 정상화 등을 지적하였음(김금수, 2014)

〈표 Ⅲ-8〉 폐기물 관련 각종 부담금 현황

구분	주요내용
폐기물부담금	살충제 유독물, 부동액, 껌, 1회용기저귀, 담배, 플라스틱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2조)
폐기물처분부담금	폐기물의 소각처분 또는 매립처분하는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
재활용부과금	제품이나 포장재 생산자에게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제품이나 포장재에 부과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금	폐기물 수집·운반자,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폐기물 최종처분업자, 폐기물 종합처분업자,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자,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 등이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허용 보관량에 맞춰 적립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사후 관리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기 위하여 부과

○ 김금수(2014)는 징수된 부담금의 대부분이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운영되며, 보조금 형태로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게 되어 지역실정에 맞도록 환경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제약이 따른다고 지적하였음

- 폐기물 관련 지방행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방비 비중이 높기 때문에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장정부가 운영하는 부담금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다시말해, 환경문제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재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환경문제 중 폐기물 관련 문제와 같이 지역내 피해를 가중시키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새로운 세수 기반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음

(3) 폐기물 처리 직접비용 보전

○ 폐기물 처리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85% 이상을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조달하고 있는 상황(김행선, 2016)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폐기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지만, 재정력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이러한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는 역부족임

○ 따라서, 지역내 폐기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폐기물에 대한 지방세 체계를 확립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폐기물 처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4) 부정적 외부효과에 따른 피해 보상

○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은 주변지역에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게 됨

-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제도는 이러한 환경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해로인해 피해를 입게 되는 지역주민에게 보상하기에는 불충분한 것이 현실임

○ 주변지역 지원제도는 해당 혐오시설로부터 반경 2㎞ 이내의 주민만을 보상의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매립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어려우므로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시행(김행선, 2016)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세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폐기물 처리방법의 효율화

○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소각보다 매립 방법에 의해 처리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이는 매립시 처리비용이 재활용이나 소각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기 때문으로 매립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음을 의미함(김행선 등, 2016)

- 사업장폐기물 처리방법별 처리비용(고인표 등, 2012) : 12~15만원/톤(소각), 17만원/톤(재활용), 4~5만원/톤(매립, 공공시설 외), 2~3만원/톤(매립, 공공시설)

○ 매립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매립의 직접비용 이외에도 환경 훼손 등과 같은 외부불경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타 처리방법에 비해 비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소각이나 재활용의 경우에도 처리과정에서 외부불경제를 초래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처리의 사회적 비용이 사적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됨(김행선, 2016)

- 이렇듯 각 처리방법별 비용과 사회적 비용의 관계를 적정한 선에서 유지하면서 적절한 폐기물처리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야 하며, 이를 위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세수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

4)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원안)

■ 필요성

○ 시멘트 공장 인근 주민의 건강피해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책 시급

○ 시멘트 생산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절실

○ 시멘트 생산지역이 소비지역보다 낙후됨에 따라 재정지원 필요

■ 법안 개요

○ [시멘트세 신설] 지방세법 개정(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추가)

과세대상(납세자)	세 율	세 수	수혜지역
시 멘 트 (시멘트 생산자)	1천원 / 톤 시멘트 40㎏ 1포 가격 5,000원 정도로 과세 시 5,040원 예상(40원↑, 0.8%↑)	522억원/연 (충북 177억원)	강원, 충북, 경북, 전남

○ [재원배분 변경] 지방재정법 동시 개정(세수의 65%를 피해 시·군 배분)

- (현행) 도 70, 시군 30 → (개정) 도 35, 시군 65

■ 추진상황(21대 국회)

○ 19대 국회 발의(`15년), 20대 국회 4년간(`16~`19년) 논의

○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재정법(이개호의원) 개정안 발의('20.10.16.)

○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 심사안건 회부(2회: '20.11.23., '21.4.22.)

- 선순위 안건 법안 심사로 후순위 안건 법안 본격심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종료

2. 축산물 관련 이슈

1) 축산물 현황

(1) 축산업계 현황

○ 우리나라 축산업은 2010년 이후 점진적으로 그 규모가 늘어나고 있음

- 축산업 생산액 증가는 경제 성장에 따른 국민들의 육류 소비량 증가와 함께 축산업에서 전업농가 비중이 증가하면서 2010년 대비 2019년 축산업 생산규모는 약 1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김필헌 등, 2021)

〈표 Ⅲ-9〉 축산업 규모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절대규모 (조원)	6.76	6.31	6.79	7.05	6.77	6.82	6.78	6.36	6.99	7.24
농림어업 대비 비중	21.9%	20.6%	22.3%	22.2%	20.3%	20.5%	21.6%	19.8%	21.8%	22.0%
GDP 대비 비중	0.5%	0.4%	0.4%	0.5%	0.4%	0.4%	0.4%	0.4%	0.4%	0.4%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김필헌·김민정(2021), 도축시설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에 따른 쟁점 검토 : 조세전가를 중심으로, 수시과제 2021-16호, p.18. 재인용.

○ 〈표 Ⅲ-9〉의 사육현황을 살펴보면, 한육우 사육 농가는 전국 93,587개소로 타 축종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돼지가 6,192개소로 나타남

- 지역별 사육현황을 살펴보면, 충북의 경우 대체로 축종에 따라 5~1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오리 사육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가구수 기준 14.8%, 마리수 기준 11.6%)

〈표 Ⅲ-10〉 지역별 사육현황(2020년 1/4분기 기준)

시도별	한육우		돼지		닭		오리	
	농장수	마리수	농장수	마리수	가구수	마리수	가구수	마리수
전국	93,587	3,197,414	6,192	11,208,400	2,887	180,352,224	493	8,187,321
서울	2 (0.0)	94 (0.0)	0	0	0	0	0	0
부산	100 (0.1)	1,536 (0.0)	14 (0.2)	4,912 (0.0)	2 (0.1)	57,500 (0.0)	0	0
대구	469 (0.5)	13,140 (0.4)	15 (0.2)	9,647 (0.1)	2 (0.1)	215,000 (0.1)	0	0
인천	496 (0.5)	20,842 (0.7)	47 (0.8)	3,359 (0.0)	13 (0.5)	387,195 (0.2)	0	0
광주	170 (0.2)	4,203 (0.1)	14 (0.2)	7,812 (0.01)	3 (0.1)	228,000 (0.1)	0	0
대전	182 (0.2)	4,492 (0.1)	2 (0.0)	100 (0.0)	3 (0.1)	80,000 (0.0)	0	0
울산	1,627 (1.7)	34,539 (1.1)	28 (0.5)	37,522 (0.3)	8 (0.3)	409,158 (0.2)	0	0
세종	684 (0.7)	25,464 (0.8)	51 (0.8)	95,632 (0.9)	25 (0.9)	3,553,200 (2.0)	0	0
경기	7,457 (8.0)	299,516 (9.4)	1,264 (20.4)	1,692,370 (15.1)	561 (19.4)	35,907,235 (19.9)	11 (2.2)	115,900 (1.4)
강원	6,898 (7.4)	226,914 (7.1)	252 (4.1)	471,590 (4.2)	139 (4.8)	7,615,465 (4.2)	2 (0.4)	28,200 (0.3)
충북	5,909 (6.3)	219,807 (6.9)	333 (5.4)	599,565 (5.4)	228 (7.9)	13,622,792 (7.6)	73 (14.8)	953,028 (11.6)
충남	11,965 (12.8)	395,375 (12.4)	1,137 (18.4)	2,342,369 (20.9)	515 (17.8)	29,674,319 (16.5)	12 (2.4)	173,342 (2.1)
전북	9,233 (9.9)	388,822 (12.2)	822 (13.3)	1,417,821 (12.7)	508 (17.6)	29,900,834 (16.6)	122 (24.7)	2,164,870 (26.4)
전남	16,744 (17.9)	536,232 (16.8)	539 (8.7)	1,182,278 (10.6)	298 (10.3)	19,592,089 (10.9)	221 (44.8)	4,021,831 (49.1)
경북	19,604 (20.9)	693,143 (21.7)	702 (11.3)	1,442,976 (12.9)	343 (11.9)	25,322,553 (14.0)	8 (1.6)	77,500 (0.9)
경남	11,375 (12.2)	297,580 (9.3)	711 (11.5)	1,368,339 (12.2)	185 (6.4)	12,083,827 (6.7)	41 (8.3)	630,650 (7.7)
제주	672 (0.7)	35,715 (1.1)	260 (4.2)	532,108 (4.8)	54 (1.9)	1,703,057 (0.9)	3 (0.6)	22,000 (0.3)

자료 : 김필한·김재희(2020), 축산업에 대한 지방세 신설과제, 한국지방세연구원, p.6.

○ 〈표 Ⅲ-11〉과 같이 축산물 공급 현황을 살펴보면, 축산물 공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013년 이후 자급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쇠고기의 경우 수입산 비중이 2016년 이후 크게 높아지고 있음

〈표 Ⅲ-11〉 주요 축산물 공급 현황

(단위: 천 톤)

연도	합계	생산				수입				자급률 (%)
		합계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합계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2011	2,036	1,246	216	574	456	790	289	370	131	60.8
2012	2,017	1,448	234	750	464	659	254	275	131	66.7
2013	2,155	1,586	260	853	473	569	257	185	127	70.8
2014	2,316	1,619	261	830	528	697	282	274	141	67.9
2015	2,458	1,682	255	842	585	776	299	358	119	67.1
2016	2,530	1,721	231	891	599	809	363	318	128	68.0
2017	2,536	1,691	239	894	558	845	344	369	132	66.7
2018	2,819	1,776	237	935	604	1,043	417	463	163	63.0

주: 생산 및 수입은 당년 기준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9),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김필헌·김재희(2020), 축산업에 대한 지방세 신설과제, 한국지방세연구원, p.7. 재인용.

(2) 도축 현황

○ 축산물의 유통을 위해서는 도축과정을 거치게 되며, 2020년 3월 기준 전국에 총 127개의 도축장이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남(김필헌, 2021)

- 이중 도축장이 가장 많은 지역은 충북(21개)이며, 전남(20개), 전북(19개), 충남(16개) 순으로 나타남

〈표 Ⅲ-12〉 도축장 현황(2020년 3월 기준)

포유류			가금류			총합계 (비율)
지역	도축장 수	비율(%)	지역	도축장 수	비율(%)	
강원	7	8.0	강원	2	5.1	9(7.1)
경기	10	11.4	경기	1	2.6	11(8.7)
경남	7	8.0	경남	0	0.0	7(5.5)
경북	9	10.2	경북	1	2.6	10(7.9)
광주	2	2.3	광주	1	2.6	3(2.4)
대구	1	1.1	대구	1	2.6	2(1.6)
대전	1	1.1	대전	0	0.0	1(0.8)
울산	2	2.3	울산	0	0.0	2(1.6)
인천	1	1.1	인천	1	2.6	2(1.6)
전남	12	13.6	전남	8	20.5	20(15.7)
전북	10	11.4	전북	9	23.1	19(15.0)
제주	2	2.3	제주	2	5.1	4(3.1)
충남	10	11.4	충남	6	15.4	16(12.6)
충북	14	15.9	충북	7	17.9	21(16.5)
합계	88	100.0	합계	39	100.0	127(100)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도축장, 집유장 현황(2020.03.20.) 김필헌·김재희(2020), 축산업에 대한 지방세 신설과제, 한국지방세연구원, p.16. 재인용.

○ 2019년 기준 지역별 도축량을 비교해 보면, 소·돼지 도축비중이 높은 지역은 경기와 충북으로 나타났으며, 닭은 전북, 오리는 전남으로 나타남

〈표 Ⅲ-13〉 지역별 도축현황(2019년 기준)

(단위: 두)

지역	소	돼지	말	양	닭	오리
전국	886,604	17,825,249	1,346	145,453	1,059,994,059	69,619,102
대구	7,254	171,408	0	0	21,546,591	0
인천	13,449	332,492	0	0	7,260,884	0
광주	12,792	230,878	4	0	0	1,309,830
대전	8,929	259,985	0	0	0	0
울산	11,432	96,198	0	821	0	0
경기	240,044	2,922,843	28	7,722	137,239,384	0
강원	31,596	583,685	71	9,765	17,531,477	0
충북	183,062	2,772,627	36	45,700	154,605,245	10,076,740
충남	37,102	2,259,528	84	16,733	121,206,425	0
전북	19,678	2,358,206	25	13	424,520,836	11,046,024
전남	73,718	1,451,105	5	40,679	64,226,821	44,591,697
경북	109,115	1,543,930	47	9,704	90,804,344	0
경남	132,284	1,977,803	3	13,601	12,553,545	2,472,488
제주	6,149	864,561	1,043	715	8,498,507	122,323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도축검사보고. 김필한·김재희(2020), 축산업에 대한 지방세 신설과제, 한국지방세연구원, p.18. 재인용.

2) 축산물 관련 세목 신설 논거

(1) 축산업의 외부불경제

○ 우리나라의 축산업은 품질경쟁력 제고 노력, 해외시장 개척 등을 통해 질적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나, 축산업의 대규모화 및 집약식 사육방식 등으로 인해 항생제 오남용 및 동물복지 문제,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등 다양한 외부불경제를 유발하고 있음(김현중 등, 2018)

- 환경오염과 관련해서는 분뇨의 악취 및 수질오염, 농촌경관 훼손과 소음공해 및 지구온난화 등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어서 지역환경을 훼손하고 있음

○ 축산업의 지역환경 관련 외부불경제를 살펴보면 가축 사육과정에서 축사 주변의 환경

오염 유발, 도축 및 운송 과정에서의 토양 및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이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Ⅲ-14〉 축산업의 외부불경제 분류

대분류	세부분류	사례
환경오염	• 분뇨의 악취 및 수질오염 • 농촌경관 훼손 및 소음공해 • 지구온난화	• 토양/지표수/지하수 등 오염 • 축사, 분뇨처리 시설, 비료살포로 인한 악취 • 불결한 축사로 인한 경관 훼손 • 메탄가스 발생 • 가축 울음소리 등 소음공해
가축질병 피해	• 질병 발생 우려 증대 • 정부 재정지출 증가 • 소비자 잉여 감소 • 지역사회의 경제적 피해	• 인수공통전염병 발생으로 가축 매몰 및 생산성 감소 • 방역 및 보상비 등 정부 재정지출 증가 • 축산물 가격 상승으로 물가 상승 • 이동제한 등으로 지역축제 등 취소

출처: 지인배 등(2013), 축산업의 외부효과와 정책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재구성.

(2) 도축장 운영에 따른 환경문제

○ 도축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질오염과 악취 등으로 인해 지역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신규 도축장 설치를 위해서는 이러한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실정임(지인배 등, 2015)

- 충북의 경우 가락동 농협공판장이 2012년 음성공판장으로 이전함에 따라 지역내에서는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주거지역 인근에 입지한 도축장들은 향후 악취와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경기, 경북 등에서 발생한 도축장 운영 관련 민원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김필헌 등, 2021)

- 경기도 김포시 : 1992년 도축사업을 시작하여 2002년부터 봄과 여름 등의 계절에 도축장 악취와 소음에 대한 주민민원이 계속되어 2020년 7월 우석식품 및 풍무동 도축장 운영을 중단하는 양해각서가 체결

- 경기도 포천시 : 2019년 기온상승으로 도축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산물 썩는 냄새로 인한 민원 발생

- 경북 구미시 : 2011년부터 가축비명 소리, 가축운송차량에서 발생하는 냄새, 도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부패 냄새 등으로 인해 집단민원이 10년째 발생

(3) 도축을 위한 가축 이동에 따른 가축방역의 어려움 발생

○ 가축전염별 발생 동향을 살펴보면, 발생두수 기준으로 법정가축전염병은 2016년 저점에서 최근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법정가축전염병 발생두수는 2010년 150만 두수 이상이었으나, 2016년 30만 두수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하여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였음

○ 가축질병의 발생으로 이를 관리하기 위한 대응기구를 운영하는 경우를 사회재난으로 분류(오경수, 2020)하고 있으며, 가축질병으로 인한 피해액을 살펴보면, 2010년 구제역으로 354만여 마리의 가축 피해로 1조 9,500억원 규모의 피해액이 발생하였음(오경수, 2020)

- 2017년 HPAI 발생으로 927만여 마리 가축 폐사로 771억원의 재산피해 발생

〈표 Ⅲ-15〉 사회재난 가축전염병 피해규모

구분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피해농가수 (가구)	가축피해 (마리)	재산피해 (억원)	피해농가수 (가구)	가축피해 (마리)	재산피해 (억원)
2009	-	-	-	-	-	-
2010	3,289	3,536,316	19,503.3	7	218,000	50
2011	-	-	-	-	-	-
2012	-	-	-	-	-	-
2013	-	-	-	-	-	-
2014	21	25,219	65	68	2,954,705	229
2015	167	147,218	354	72	2,929,070	223
2016	12	22,231	120	2	11,948	3.7
2017	21	1,392	58.6	294	9,276,576	771.2
2018	2	11,726	37	66	5,862,386	612
총합계	3,512	3,744,102	20,137.9	509	21,252,685	1,888.9

출처: 오경수(2020). 지방자치단체의 가축전염병 대응을 위한 재원확충 방안 검토,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필한·김재희(2020). 축산업에 대한 지방세 신설과제, 한국지방세연구원, p.36. 재인용.

3) 도축세(원안)

○ 김필헌 등(2021)이 제시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 축산시설분으로 세목 신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함

- 먼저, 육가공처리세, 축산유통개선세, 지역자원시설세(축산분), 육류소비세 등 다양한 형태로 도입 검토가 가능하지만, 새로운 세목의 신설시 상당한 조세저항에 부딪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 지역자원시설세 개편에 따라 특정시설분으로 과세하는 방안으로의 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과세취지 상 목적세 형태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음
- 하지만,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으로 과세할 경우 생물자원에 대한 개념규정이 요구된다는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해당 재원을 이용하여 지역 축산업 선진화 및 구조 고도화 등에 투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음
- 세수는 도축장 소재지에서 징수하여 시도별 세액 안분방식으로 하며, 안분 기준은 가축 도축 또는 사육두수에 따르되 도축장 소재지 시도에는 가중치를 두는 방식을 제안함

○ 징수체계는 도축장을 통해 도축할 경우 도축경영자가 특별징수하여 납부하고, 자가도축일 경우 해당 관할 자치단체에 직접 납부하는 방식의 체계를 제안하였으며, 세수 안분은 주행분 자동차세의 경우를 준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음

○ 축산물에 따라 축산농가, 육류가공업체 등 도축하려는 자의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도축하려는 자의 유형에 따라 세율 적용기준 차등화하야 한다고 보았음

- 도축하려는 자의 유형을 고려하여 차등화된 세율 적용 필요

○ 하지만, 정액세의 특성 상 주기적인 세율조정이 필요하며, 세수규모가 열악하여 세목 신설이 어렵다는 주장 등 세목신설을 위한 논의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음

제Ⅳ장
세목신설안의 대안 탐색

1. 정부정책 방향 : 지방세입 확충 기반 강화

1) 기본 방향

○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따르면, 지방세입 확충기반 강화를 위하여 지방세 신세원을 발굴하고, 지방세제 및 세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지방세 비과세·감면율 관리와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을 제고해야 함

2) 주요내용

○ 「지치분권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지방세입 확충기반 강화 내용 중 지방세 신세원 발굴과 관련한 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특정자원이나 자원을 활용한 생산시설의 경우 현재 일부 과세중에 있으나, 외부불경제, 과세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신규로 지방세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과세대상이 되는 지하자원, 지하수, 수력/화력/원자력 발전 등과 유사한 대상에 대해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확대하여 추진

현재 과세 중	현재 미과세 중
지하자원('92.), 지하수('92.), 수력발전('92.), 원자력발전('06.), 화력발전('14.) 등	해저자원, 천연가스 생산, 석유 정제 시설, 시멘트 생산시설, 사용 후 핵연료 등

2. 대안 탐색 : 폐기물 유통 및 처리 관련 세목 신설

1) 폐기물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 부과대상 및 징수기관

○ 폐기물은 발생하여, 수집·운반을 거쳐 최종처분의 단계를 밟게 되며, 각 단계별로 현재 부과되고 있는 부담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폐기물이 발생하는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단계(폐기물부담금)

- 부과대상 : 살충제(유리병,플라스틱용기), 유독물(금속캔, 유리병, 플라스틱용기) 부동액, 껌, 1회용 기저귀, 담배(전자담배포함)의 제조 · 수입업자 또는 도 · 소매업자,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으로서 [별표 1의2]에 따른 업종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도 · 소매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품
- 납부대상자 :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 폐기물 배출 단계(폐기물처분부담금)

- 부과대상 : 폐기물의 소각처분 또는 매립처분에 대하여 부과
- 납부의무자
  - 생활폐기물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 징수기관
  - 생활폐기물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 사업장폐기물 : 한국환경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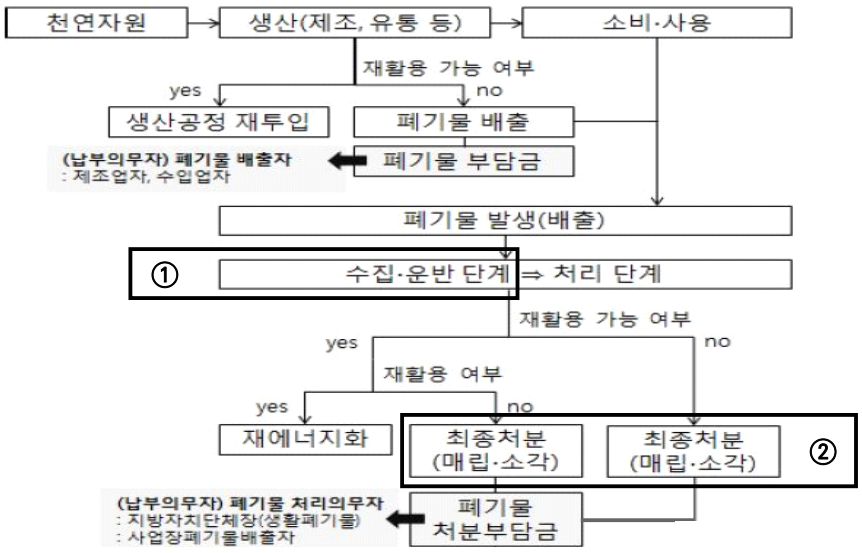

자료 : 김행선 등(2016). 지역자원시설세과세대상확대방안: 폐기물및천연가스를중심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그림 Ⅳ-1〉 폐기물 발생 및 유통 과정

○ 폐기물 수집·운반 단계(①) : 없음

○ 폐기물 최종처분(소각 또는 매립) 단계(②) : 없음

■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

○ 징수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전액 국고(환경개선특별회계)로 귀속되며, 다음의 용도로 사용됨(자원순환기본법 제22조)

-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교육, 문화조성 등의 사업
- 폐기물처리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처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 자원순환산업 및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을 위한 단지의 조성·운영
- 폐지·고철 등을 수집·운반하는 자와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의 수집 환경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사업
-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 및 처분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사업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 문제점

○ 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 폐기물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비산먼지 등 각종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관 및 예산의 운용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임
-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도로 및 SOC 등을 활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부담이 필요함

○ 폐기물 처분(매립 및 소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

- 폐기물처리 및 자원순환 관련 시설과 그 주변지역의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잘 알고 있으며, 민원의 발생에 대한 신속한 처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임
- 따라서, 폐기물 처리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역할을 수행해야 함

2) 지역자원시설세(대안1)

(1) 지역자원시설세 개요

○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지역균형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의 충당을 목적으로 함(김행선 등, 2016)

○ 지역자원시설세는 '11년부터 지역개발세와 공동시설세를 통합하여 도입한 세목으로 기존의 지역개발세는 특정자원분으로, 공동시설세는 특정부동산분으로 각각 편제됨(정종필, 2015)

- 지역개발세는 지역의 균형개발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1992년 도입된 목적세이며, 공동시설세는 1954년 지방세법 일부개정으로 도입되었음
- 공동시설세는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해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목임

○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요건

-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은 특정자원분과 특정부동산분으로 구분하여 「지방세법」 제142조~제146조 규정에 따름

○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목적

-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이후 처리시설을 가동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외부불경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일종의 환경세 형태)를 부과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김행선 등, 2016)

○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원칙(원인자부담원칙과 응익원칙)

- 김행선 등(2016)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내 환경오염의 문제를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원인자부담원칙과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의 수혜자로서의 혜택에 공공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 일정부분 지방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응익원칙에 의거하여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음

(2) 지역자원시설세로 운영시 문제점 진단

■ 폐기물 관련 지원금 등과의 지역자원시설세 목적 차별성

○ 폐기물 처리시설의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금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시 타당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금과 차별화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여야 함

○ 이와 관련하여 김행선 등(2016)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과 지역자원시설세는 도입 목적 및 기본 성격에서 구분되며, 운영주체, 비용부담 주체 및 지원대상에서 차별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그 시설이 입지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과 명확히 구분되는 독자적인 제도로 존립할 수 있다고 함

- 현재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은 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금 수준의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특정

세원을 활용하여 이러한 환경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납세자 담세능력 문제

○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환경부고시 제2016-27호)와 관련하여 폐기물 처리업체의 처리방법별 처리 단가를 살펴보면, 사업장폐기물은 매립(톤당 8.8만원), 소각(톤당 21.3만원), 지정폐기물은 매립(톤당 6.5~21만원), 소각(톤당 20~50만원) 수준임

〈표 Ⅳ-1〉 폐기물 종류별 소각 · 매립처분 단가

(단위: 원/톤)

구분	폐기물 종류			소각·매립 단가
매립처분단가	지정폐기물	광재		70,000
		분진		90,000
		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 폐사		85,000
		폐내화물 및 도자기조각		70,000
		소각잔재물		75,000
		고형화처리물		65,000
		폐촉매		80,000
		폐흡착재 및 흡수재		85,000
		오니류		90,000
		폐석면		210,000
	사업장폐기물	일반		88,000
소각처분단가	지정폐기물	폐유	액상	200,000~300,000
			고상	200,000~300,000
		폐유기용제	할로겐족	300,000~350,000
			비할로겐족	200,000~250,000
		폐합성수지		200,000
		폐페인트 및 폐락카		350,000
		폐유독물		250,000~500,000
	사업장폐기물	일반		213,000

자료 : 강은희 의원실 제공자료 및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환경부고시 제2016-27호). 김선행·윤태연(2016),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방안 : 폐기물 및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재인용.

○ 김행선 등(2016)은 2013년 기준 한국은행 기업경영 분석결과에서 제시된 국세청의 법인세 신고자료에 수록된 조사대상 법인의 경우 영업이익률 4.1%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민간 폐기물처리업체의 영업이익률은 평균 24.29%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면서 전체 법인의 평균 영업이익률을 상회하는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어서 폐기물처리업체의 지역자원시설세 부담 여력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음

- 상위 6개 민간 폐기물처리업체(2014년, 평균치)의 매출액은 25,018백만원, 매출원가는 16,298백만원이며, 영업이익은 6,043백만원으로 나타남
- 민간 폐기물처리업체의 수익성이 양호한 상황으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시 조세부담은 이들 업체의 투자위축이나 경영수지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김행선 등, 2016)

■ 이중과세의 문제

○ 폐기물의 소각 또는 매립을 통해 처분하는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부담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이 현재 운영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가할 경우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를 폐지하고,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으나, 중앙정부와의 갈등발생이 우려됨

○ 또한,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위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자원시설세로의 전환 명분이 약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지역자원시설세를 통한 폐기물에 대한 부과대상 및 시기는 폐기물처분부담금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폐기물의 최종처분(소각 및 매립) 행위를 행하는 자에게 그 행위로 인해 주변지역의 환경문제 발생의 원인제공자로서의 원인자부담원칙에 입각하여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담배 관련 조세 및 부담금

- 현재 담배와 관련하여 지방세(담배소비세)는 갑당 4,500원을 기준으로 1,007원으로 22.4%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841원으로 18.7%를 차지하고 있음
- 납세의무자는 제조자로 제조장에서 반출된 담배에 대해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며, 납세지는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임

〈표 Ⅳ-2〉 담배 관련 조세 및 부담금

구분		담배가격 구성	비중
조세 및 부담금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41	18.7
	담배소비세	1,007	22.4
	지방교육세	443	9.8
	개별소비세	594	13.2
	부가가치세	433	9.6
	소계	3,318	73.7
유통마진 및 제조원가		1,182	26.3

(3) 과세방안

■ 과세요건 및 방안

○ 목적 : 시·도 내 위험·혐오시설물로 인해 야기되는 외부비용을 내부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물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함임(정종필, 2015)

○ 과세대상 : 사업장폐기물

○ 납세의무자 : 폐기물(재활용 포함)을 소각/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자(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8호, 제25조,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3)[13]

- 처분하는 자 :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을 운영하는 자(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13) 세금 부과 시 폐기물처리시장에서의 가격변화에 따라 최종처리세의 직접적 부과대상(혹은 납부자)이 배출사업자, 전문처리기업인지에 관계없이 종국적으로 세금이 양자 사이에 분담되는 형태는 동일함(김금수, 2014, p83). 따라서, 매립소각시설 운영자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최종처분업, 폐기물종합처분업)(국가·지방자치단체 비과세)

- 부과의 궁극적 대상 : 폐기물 배출 일반사업자(조세 전가의 문제 발생)
- 납세의무자를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 규정할 경우, 반입하는 자는 폐기물 배출자,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 등으로 해석이 가능하여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납세지 : 폐기물 소각 및 매립지의 소재지

- 폐기물 발생지로 할 경우 납세 납세의무자의 소재지와 발생지간의 과리로 인한 행정비용 발생
- 폐기물 최종처분에 따른 행정 및 환경비용은 처분 소재지에서 발생하기 때문임

○ 과세표준과 세율 :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요율 준용

〈표 Ⅳ-3〉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요율(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별표6)

구분		매립	소각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제외)	불연성	kg당 10원	
	가연성	kg당 25원	kg당 10원
건설폐기물		kg당 30원	kg당 10원

○ 지역자원시설세와 폐기물처분부담금 비교

〈표 Ⅳ-4〉 지역자원시설세와 폐기물처분부담금 비교

구분	지역자원시설세	폐기물처분부담금
납세(납부) 의무자	·폐기물을 소각 및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자	·폐기물처리의무자(자치단체장,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부과 근거	·처리시설 가동으로 발생하는 외부불경제 문제를 개선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자에게 과세하여 재활용 유도 및 폐기물 자원화 촉진
수입의 용처	·지자체가 관할하는 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환경개선 비용 충당	·자원순환 인프라 구축 및 시설주변 등 제한된 지역 환경 개선에 재투자 ·홍보·교육·연구·개발·국제협력사업 등에 사용

자료 : 김선행·윤태연(2016),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방안 : 폐기물 및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재구성.

3) 폐기물 반입세(대안2)

■ 폐기물 반입세 신설

○ 폐기물을 지역(시도)외에서 반입을 시도할 경우 부과

■ 반입세 운영 사례(일본)

○ 최철호(2011)는 타지미(多治見)시의 일반폐기물매립세와 같은 반입세 운영사례를 제시하였음

- 타지미시는 쓰레기 배출량 억제를 도모하고, 환경기본계획에 따른 환경정책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법정외 목적세로 일반폐기물매립세를 신설하였음
- 타지미시는 나고야(名古屋)시의 쓰레기를 매립하는 처분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나고야시의 쓰레기를 반입하는 물량을 줄이기 위해 나고야 시민에게 환경세의 일환으로 일반폐기물매립세를 부과하였음
- 타지미시의 일반폐기물매립세는 나고야시의 쓰레기 배출 감량을 목적으로 하는 세목으로 나고야 시민에 대해서 과세하였으나, 타지미 시민에게는 과세하지 않았음

○ 본 과세의 문제점으로는 과세의 합리적인 근거가 미약하다는 점임

- 나고야 시민만을 대상으로 하여 납세의무자의 범위가 실질적으로 특정 업종 또는 특정 지역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의 한정된 사람에게 과세를 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문제가 지적될 수 있음
- 또한, 특정의 사람만을 대상으로 과세할 경우 세목의 신설을 통해서가 아니라 분담금이나 부담금 등의 형식으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가 존재할 수 있음

■ 과세요건 및 방안

○ 목적 : 타 시·도에서 반입되는 폐기물로 인해 발생하는 외부비용을 내부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부비용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함임

○ 과세대상 : 사업장폐기물

○ 납세의무자 : 폐기물을 수집 및 운반하는 자(폐기물관리법 제25조)

-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영업

○ 납세지 : 폐기물 수집 및 운반하는 자가 폐기물을 운반하여 반입한 지역(시·도)

- 시·도 경계를 벗어나 타지역으로 운반한 경우에 한정(동일 시·도 내 운반은 제외)

○ 과세표준과 세율 : kg당 5원

4) 대안 비교 및 세수 추계

(1) 대안 비교 및 기대효과

■ 대안 비교

구분	지역자원시설세(대안1)	폐기물 반입세(대안2)
장점	-중간처분, 최종처분 사업자의 과세물건을 명확히 추적 가능 -처리시설을 가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불경제를 최소화하여 자원배분 효율성 제고 -납세지를 시설 소재지로 지정하여 시설의 운영에 따른 환경피해를 지역내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자원으로 활용 가능 -재활용 폐기물 중 시멘트 관련 재활용폐기물이 추가될 경우 세수증대 효과가 큼	-지역간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 가능 -재활용폐기물까지 과세물건으로 하여 폐기물 전반에 걸친 관리 가능 -폐기물 전반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세수증대효과가 큼
단점	-시멘트 관련 직접 제품제조 등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과세논쟁 가능	-시도간 이동하는 폐기물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과세논쟁 가능 -납세자의 주소지가 납세지와 불일치는 경우 과세논쟁 가능

■ 기대효과

○ 과세정의 실현

- 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폐기물을 매립시설에 반입하는 자는 지역의

교통, 물류 등 인프라를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세 부담은 미미한 수준으로 이행보증금, 반입수수료 등 각종 부담금을 일부 부담하고 있지만, 지방세와는 과세 목적이나 귀속이 상이하여 목적세로서 지방세 부과의 필요성이 제기됨(김행선 등, 2016)

- 따라서, 이상의 세목이 신설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의 충족으로 인한 지역내 환경문제에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지역 주민 불이익의 보상

- 폐기물 처리시설 인근지역의 지가 하락 및 인구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지역주민의 불이익을 보상하는 체계의 구축이 절실함
- 따라서, 지역자원시설세의 도입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목적세로서의 안전관리사업, 환경보호 및 개선 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음

○ 지방재정자립에 대한 기여

-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소요되는 직접 비용의 85% 이상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2) 세수추계

■ 충북 폐기물 유통 현황

○ 2019년 기준 폐기물의 발생, 운반, 처리 중 하나 이상이 충북인 경우의 폐기물 총량은 15,093,871톤임

○ 충북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6,610,884톤, 충북에서 운반한 폐기물은 9,670,096톤, 충북에서 처리된 폐기물은 11,439,847톤임

〈표 Ⅳ-5〉 충북 폐기물 유통 현황

(단위 : 톤)

구분			발생		운반		처리	
			충북	합계	충북	합계	충북	합계
합계			6,610,884	15,093,871	9,670,096	15,093,871	11,439,847	15,093,871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01	25,635	82,665	29,697	82,665	77,062	82,665
		02	113,962	145,565	27,916	145,565	41,739	145,565
		03	52,851	117,124	30,976	117,124	56,275	117,124
		04	138,836	196,051	95,891	196,051	91,767	196,051
		05	4,841	7,963	4,509	7,963	2,625	7,963
		06	53,897	94,967	40,189	94,967	37,826	94,967
		07	9,651	37,993	10,276	37,993	31,268	37,993
		08	192	715	155	715	536	715
		09	8,164	8,521	7,382	8,521	4,776	8,521
		10	8,115	36,085	4,880	36,085	30,009	36,085
		11	0	0	0	0	0	0
	기타 장관고시	40	3,513,595	5,148,643	4,472,193	5,148,643	4,492,776	5,148,643
	일반폐기물	51	2,680,979	9,217,412	4,945,867	9,217,412	6,573,020	9,217,412
생활폐기물		91	166	166	166	166	166	166

자료 : 한국환경공단, 올바로시스템 자료 재구성.

○ 충북에서 처리된 폐기물 11,439,847톤 중 충북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4,501,392톤, 외부반입은 6,938,455톤으로 나타남

〈표 Ⅳ-6〉 충북외 타 시도 반입 현황

(단위 : 톤)

구분	합계	충북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합계	11,439,847	4,501,392	221,067	61,018	70,631	784,296	3,686	190,784	146,943	173,046
구분	**외부반입**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상**	**제주**
합계	6,938,455		1,944,681	588,516	1,240,856	151,390	295,995	692,672	369,369	3,504

자료 : 한국환경공단, 올바로시스템 자료 재구성.

■ 처리방법별 현황

○ 한국환경공단의 올바로시스템 자료를 근거로 살펴본 결과, 충북을 최종처리지로 하는 경우 2019년 기준 11,439,847톤 중 소각과 매립이 648,897톤으로 집계됨

- 시멘트 관련(직접 제품제조) 사용된 재활용 폐기물은 3,337,240톤으로 나타남[14]

- 연료·고형연료제품 제조를 위해 사용된 재활용 폐기물은 298,415톤으로 나타남

〈표 Ⅳ-7〉 처리지(충북) 기준 처리방법별 처리현황

(단위 : 톤)

구분	합계	재활용			소각	매립	연료	기타
		소계	시멘트 관련 (직접 제품제조)	기타				
충북	11,439,847	5,718,154	3,337,240	2,380,914	256,997	391,900	298,415	4,774,381

자료 : 한국환경공단, 올바로시스템 자료 재구성.

■ 지역자원시설세 추계

○ 세수 추계 전제조건

- 가연성을 전제로 매립 kg당 25원, 소각 kg당 10원 적용
- 시멘트 관련 직접 제품제조는 소각으로 간주하여 kg당 10원 적용
- 연료·고형연료제품 제조는 소각으로 간주하여 kg당 10원 적용

○ 세수 추계

- 2019년 기준 소각, 매립, 연료 등 과세대상 폐기물량은 4,284,552톤이며, 세수추계액은 53,200백만원으로 나타남

〈표 Ⅳ-8〉 과세대상 및 세수추계액

(단위 : 톤, 백만원)

구분	합계	소각	매립	시멘트 관련	연료
과세대상	4,284,552	256,997	391,900	3,337,240	298,415
세수추계	53,200	2,570	9,797	33,372	7,460

■ 폐기물 반입세 추계

○ 세수 추계 전제조건 : kg당 5원 적용

○ 세수 추계 : 2019년 충북외에서 반입된 폐기물량은 6,938,455톤이며, 세수추계액은 34,692백만원으로 나타남

14) 해당 폐기물처분업자는 아세아시멘트(주), 한일시멘트(주) 단양공장, 성신양회(주)단양공장, 한일현대시멘트(주)단양공장임

3. 대안 탐색 : 축산물 관련 세목 신설

1) 축산물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 축산물 사육 및 도축 현황

○ 대표적인 사육 축산물은 소, 돼지, 닭, 오리 등이며, 이들 가축은 전국적으로 사육되고 있음

- 하지만, 지역별 사육 규모가 상이한 상황으로 2020년 말 기준 충북의 경우 소는 6.9%, 돼지는 5.6%, 닭은 7.5%, 오리는 6.8% 정도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Ⅳ-9〉 지역별 가축사육 두수 및 비중

(단위 : 천 두, %)

구분	사육 두수				사육 비중			
	소(소계)	돼지	닭(소계)	오리	소(소계)	돼지	닭(소계)	오리
합계	7,200	11,078	178,528	7,929	100.0	100.0	100.0	100.0
서울	0	0	0	0	0.0	0.0	0.0	0.0
부산	3	4	0	0	0.0	0.0	0.0	0.0
대구	27	8	324	0	0.4	0.1	0.2	0.0
인천	45	4	542	0	0.6	0.0	0.3	0.0
광주	9	9	231	0	0.1	0.1	0.1	0.0
대전	9	0	55	0	0.1	0.0	0.0	0.0
울산	73	35	375	0	1.0	0.3	0.2	0.0
세종	57	95	3,235	0	0.8	0.9	1.8	0.0
경기	790	1,703	34,909	207	11.0	15.4	19.6	2.6
강원	506	464	7,450	29	7.0	4.2	4.2	0.4
충북	**495**	**615**	**13,474**	**539**	**6.9**	**5.6**	**7.5**	**6.8**
충남	913	2,331	27,860	184	12.7	21.0	15.6	2.3
전북	866	1,379	30,894	1,878	12.0	12.5	17.3	23.7
전남	1,172	1,177	21,659	4,360	16.3	10.6	12.1	55.0
경북	1,510	1,457	24,454	92	21.0	13.2	13.7	1.2
경남	647	1,272	11,195	618	9.0	11.5	6.3	7.8
제주	77	523	1,872	21	1.1	4.7	1.0	0.3

○ 반면, 도축되는 가축의 경우 대도시권에서의 도축은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충북의 경우 소는 20.0%, 돼지는 15.3%, 닭은 13.9%, 오리는 17.5% 정도로 사육규모에 비해 2-3배 수준 도축이 이루어지고 있음

〈표 Ⅳ-10〉 지역별 도축 두수 및 비중

(단위 : 천 두, %)

구분	도축 두수				도축 비중			
	소(소계)	돼지	닭(소계)	오리	소(소계)	돼지	닭(소계)	오리
합계	887	18,330	1,070,408	66,970	100.0	100.0	100.0	100.0
대구	7	173	21,674	0	0.8	0.9	2.0	0.0
인천	15	270	6,206	0	1.7	1.5	0.6	0.0
광주	13	396	0	6	1.5	2.2	0.0	0.0
대전	10	237	0	0	1.1	1.3	0.0	0.0
울산	11	105	0	0	1.2	0.6	0.0	0.0
경기	244	2,761	136,466	22	27.5	15.1	12.7	0.0
강원	30	583	20,076	0	3.3	3.2	1.9	0.0
충북	**177**	**2,805**	**148,514**	**11,752**	**20.0**	**15.3**	**13.9**	**17.5**
충남	45	2,655	130,439	0	5.1	14.5	12.2	0.0
전북	19	2,376	445,175	10,316	2.1	13.0	41.6	15.4
전남	74	1,483	58,152	42,208	8.3	8.1	5.4	63.0
경북	109	1,524	86,097	0	12.3	8.3	8.0	0.0
경남	127	2,053	9,380	2,552	14.4	11.2	0.9	3.8
제주	5	910	8,230	115	0.6	5.0	0.8	0.2

■ 문제점

○ 사육지역과 도축지역이 상이하다는 것은 사육농가로부터 도축시설까지의 이동이 빈번함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도 경계를 넘는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가축방역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로 인해 도축시설이 위치한 지역은 가축의 이동에 따른 전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동시에 발생하는 각종 환경적 문제를 감수하고 있음

○ 또한, 도축시설에서의 도축행위와 관련하여 집유장 및 주변환경이 열악하여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가 큰 상황으로 주변환경의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재정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임

2) 축산물유통세(신설안)

(1) 축산물유통세 개요

○ 축산물의 이동시 발생하는 방역 및 주변환경 피해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세목

(2) 과세방안

○ 목적 : 시군 내로 도축을 위해 유입되는 가축으로 인해 가축방역 비용의 증가와 도축시설 주변의 환경악화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재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행정비용을 충당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부비용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함임

○ 과세대상 : 도축을 위해 도축시설에 반입되는 가축(소, 돼지, 닭, 오리)

○ 납세의무자 : 도축장을 운영하는 자(축산물위생관리법 제21조 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의 “1. 도축업” 영업허가를 득한 자)

○ 납세지 : 도축장 주소지

- 도축을 위해 관 내·외에서 반입 및 집유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및 환경비용은 처분소재지에서 발생하기 때문임

○ 과세표준 및 세율 : 도축하는 가축의 유형이 상이하나, 도축검사시 수수료는 검사가축의 두수로 책정하기 때문에 이를 준용하고, 각 가축 유형에 따른 수수료의 10%를 축산물 유통세율로 함

- 도축검사 수수료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하여 운여하고 있으며,「축산물위생관리법 제41조」, 「충청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에 관한 조례

(2017.12.28.)」에 의거한 수수료를 기준으로 할 경우 세율 및 세액은 다음과 같음

〈표 Ⅳ-11〉 도축검사 수수료

구분	수수료	세율	세액
소, 말, 사슴	3,000원/두	10%	300원/두
돼지, 양, 가축 외의 동물	1,000원/두		100원/두
닭	6원/수		0.6원/수
오리	12원/수		1.2원/수

제V장 결론

○ 폐기물 소각 및 도축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의 조달은 지방세를 신설하여 조달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역내 발생하는 불경제효과 시정해 나가야 함

-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관리는 실질적으로 중앙정부가 수행하고 있으나, 폐기물의 발생과 유통에 따른 지역의 환경피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하는 문제로 인해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이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실정
- 도축세는 세수의 영세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폐지하였으나, 지역내 도축시설의 환경 문제 유발시설이라는 점을 간과하여 이들 시설의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 발생

○ 이렇듯 지역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세제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을 보호하거나 개발, 안전관리, 환경보호 및 개선과 관련한 사업,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는 기본적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시키는 지역내 환경오염과 같은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외부불경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로 부과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김행선 등, 2016)

- 폐기물 반입세 과세는 타 시·도에서 반입되는 폐기물로 인해 발생하는 외부비용을 내부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물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사육지역과 도축지역이 상이하다는 것은 사육농가로부터 도축시설까지의 이동이 빈번함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도 경계를 넘는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가축방역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로 인해 도축시설이 위치한 지역은 가축의 이동에 따른 전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동시에 발생하는 각종 환경적 문제를 감수하고 있음

- 또한, 도축시설에서의 도축행위와 관련하여 집유장 및 주변환경이 열악하여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가 큰 상황으로 주변환경의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재정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임

○ 축산물유통세는 시군 내로 도축을 위해 유입되는 가축으로 인해 가축방역 비용의 증가와 도축시설 주변의 환경악화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재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행정비용을 충당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함임

참고문헌

○ 고인표·황용우 등(2012). 사업장폐기물 관리정책 개선방안 마련 연구, 한국환경공단.

○ 국립환경과학원(2015).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환경보건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 김금수(2014).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지방세과세 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 김행선·윤태연(2016).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방안 : 폐기물 및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 김용준·엄남일·김우일·이영기·김기헌(2018). “시멘트산업에투입되는폐기물과시멘트제품의 중금속 함유량과의 상관관계 분석연구,” Journal of Korea Society of Waste Management, 35(8).

○ 김필헌·김민정(2021). 도축시설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에 따른 쟁점 검토: 조세전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 김필헌·김재희(2020). 시멘트생산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및 운용 방안 연구 -강원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 김필헌(2021). 축산업 외부불경제 교정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지방세연구원.

○ 김현중·박성진·김태후·강수진(2018). 가축분뇨처리 사업군 심층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오경수(2020). 지방자치단체의 가축전염병 대응을 위한 재원확충 방안 검토, 한국지방세연구원.

○ 이현우(2012). 지방자치단체 과세자주권 실현 방안 : 지방환경세 도입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 정종필(2015). 신세원 발굴을 통한 지방세 확충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 지인배·송우진·김진년·이용건(2013). 축산업의 외부효과와 정책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지인배·허덕·김현중·서강철·주정선(2015). 도축산업 중장기 발전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철호(2011). 일본의 지방환경세에 관한 일고찰.

○ 칸 저널, “송옥주의원 “시멘트업계NOx배출‘심각’””, 2019.10.04.

○ 행정안전부(2020).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 환경부·한국환경공단(2019), 2019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021 기본과제

지방세 세원발굴

- 지방환경세제 도입 검토 -

발행인 | 정 초 시
발행일 | 2021년 12월
발행처 | 충북연구원
전화 043-220-1107 팩스 043-220-1199
28517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2-1(문화동 15)
ISBN | 978-89-6455-556-9 93320

* 본 출판물의 판권은 충북연구원에 속합니다.
* 본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2021년도 기본과제 본보고서의 전문은
충북연구원 홈페이지(www.cri.re.kr)를 참고바랍니다.

CRI CHUNGBUK RESEARCH INSTITUTE
28517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2-1(문화동15)
TEL : 043) 220-1107 FAX : 043) 220-1199 www.cri.re.kr

비매품/무료
93320
9 788964 555569
ISBN 978-89-6455-556-9